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- 지방자치법 개정(1994. 3. 16 법률 제4741호)으로 읍면동장의 직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됨에 따라
- 읍면동장에 준하는 증평출장소 지소장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변경하고자함

□ 주요 골자

- 증평출장소의 지소장을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함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
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2항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,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에 재직중인 지소장은 그 임기 만료일(근무상한기한을 연장하는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본 조례 시행 당시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잔여 임기를 말한다)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